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단519197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정은혜

피 고 1. B

2. 법무법인(유한)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기천

변 론 종 결 2021. 7. 2.

판 결 선 고 2021. 9.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법무법인(유한) C(조직변경 전: 법무법인 C, 이하 ‘피고 C’이라 통칭한다)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D지구 내에 문화단지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을 그 시공사로 정하고, 2009. 5. 4.경 E와 사이에 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E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받은 'PF'자금 등을 보관하면서 이를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2017. 1.경 분양대금 등으로 위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자, 원고는 E에게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E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E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 B와 변호사 F 등에게 위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고, 2017. 7.경 피고 B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보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1) 원고는 피고 B에게 착수보수로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 2) 피고 B이 위임사무에 착수한 날로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1년을 초과하여 진행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율에 따른 시간당 보수를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3) 위 민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게 되는 경우 피고 B은 원고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고소대리를 하여 형사사건 진행을 한다.

다.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위 착수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9. 1.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9. 21.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9922).

피고 B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10. 23.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17940), 위 착수보수금을 추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7. 11. 20. 변호사 F 등과 함께 피고 C을 설립하여 그 무렵 피고 C의
구성원이자 대표자가 되었고, 피고 C은 2021. 1. 22.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7. E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9455), 피고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C은 2017. 12. 20. 위 법원에 피고 B을 담당변호사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의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18. 10. 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는바, 이 경우 수임인인
피고 B으로서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거의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가 기지급한 착수보수 중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만일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고 B의 지위가 피고 C에게 승계되었다면, 피고 C이 위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예비적 청구원인).

나. 피고들

당초 피고 B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할 주된 사무는 E 측의 부당이득과 관련한
범죄혐의를 찾아내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었고, 피고들은 위 형사사건과 위 민사사건 모두에 관하여
수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금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82다카284 판결 참조). 그런데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측이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그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피고 측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피고 측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위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E 측을 형사고소할 경우 필요한 사무처리를 피고 B에게 위임한 사실, ② 피고 B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에 착수한 이후 2017. 12.경부터는 피고 C 소속 변호사로서 피고 C 명의로 계속하여 위임사무를 수행한 사실, ③ 그리하여 피고 B은 2018. 1. 초경 피고 C의 담당변호사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E의 당시 대표이사인 H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인천지방법검찰청 2018형제191), 이후 2018. 8.경까지 계속하여 위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④ 원고는 당초 위 민사사건에 관하여 피고 B 외에 변호사 F 등과도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과 위 별도의 위임계약의 각 내용(가령 피고 B의 경우 위 F 등과 달리 위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위 각 위임계약 체결 이후 피고 B 등이 이행한 사무처리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 B의 경우에는 위 형사사건이 오히려 주된 위임사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E 사이의 분쟁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점(당초 원고가 PF대출 상환 완료 당시 E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던 금액만 560여 억 원에 이른다), ⑥ 피고 B이 위 사무처리 과정에서 검토한 자료가 방대한 점, ⑦ 피고 B이 위 형사사건에서 작성, 제출한 고소장, 의견서, 항고이유서, 항고보충이유서의 각 내용, ⑧ 이 사건 위임계약상 약정된 총 보수 금액과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시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지급받은 착수보수가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시까지 처리한 사무에 대한 적정 보수 금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